

## 2013년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3. 12. 18(수) 11:00

2. 장 소 : 대표이사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7명중 7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이사 이상주, 이사 김정환, 이사 김영길,  
이사 흥인식, 이사 이충호, 이사 황성수

참석직원: 도경옥원장, 이상민국장, 김덕준국장, 손소희법인국장

4. 심의안건: 1) 2013년도 3차추경예산(안)

2) 2014년도 예산(안)

3) 예림일터원장 임용 건

4) 본점사업자등록증 명칭변경 및 핸인핸 부평지점 설치 건

5) 정관변경 건

6) 기타토의(안)

5.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장영순의장 :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3) 안건상정 및 결의사항

(1) 제1안건 2013년도 3차추경(안) 심의

◦ 장영순의장 : 법인과 각 기관의 2013년 3차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손소희법인국장 : 손파손 2013년 3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이상민예림원국장 : 예림원 2013년 3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도경옥올리브하우스원장 : 예림공동생활가정 2013년 3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이정선예림일터팀장 : 예림일터 2013년 3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홍인식이사 : 2013년도 3차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 부득이한 수입 및 사업의 변동에 따른 합당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김영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물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1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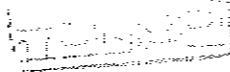
## (2) 제2안건 2014년도 예산(안) 심의

- 장영순의장 : 법인과 각 기관의 2014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손소희법인국장 : 손파손 2014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이상민예림원국장 : 예림원 2014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도경옥올리브하우스원장 : 예림공동생활가정 2014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이정선예림일터팀장 : 예림일터 2014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김덕준핸인핸국장 : 핸인핸은 수익회계에서 일반관리운영비 216,919,600 원과 종사자추가인건비 91,876,360원 책정과 핸인핸 2014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각 기관의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2014년 인천시 내시자료가 확정되면 1차추경으로 조정할 것이며 각 기관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보충설명하다.
- 김영길이사 : 201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 법인 및 기관의 사업운영에 합당한 예산의 편성이사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충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2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3) 제3안건 예림일터원장 임용

- 장영순의장 : 예림일터 현 원장인 김병관원장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됨에 따라, 공개채용한 결과 공보연씨를 임용하고자 합니다. 공보연씨는 단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예림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전문성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자로서 예림일터원장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제출된 인사서류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요청하다.



- 이상주이사 : 장애인복지사업에 오랜 경력이 있는 공보연씨를 예림일터원장으로 임용할 것에 동의하다.
- 김정환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3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4) 제4안건 본점사업자등록증 명칭 변경 및 핸인핸 부평지점 설치 건

- 장영순의장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본점사업자등록증 명칭변경 및 핸인핸 부평지점 설치 건을 상정하며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손소희법인국장 : 현재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법인명을 사회복지법인 손과손으로 변경하고, 업태와 종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합니다. 핸인핸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서 2011년 동구 송림동으로 첫솔사업을 이전하고 부평구에서는 카트리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 E동에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헌인행 부평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하여, 조달청 입찰 참여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성을 설명하다.

○ 흥인식이사 : 법인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태와 종목의 증가로 추가등록하는 것과 헌인행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지점설치는 앞으로 더 큰 발전과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상주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4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5) 제5안건 정관변경 건

○ 장영순의장 : 인천예림학교 학급증설로 직급변경과 수익사업의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건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인천예림학교는 2013년 3월부터 학급수가 25학급으로 증설되어 운영하고 있는바, 201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지침의 사무직원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일반직 직급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24학급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5학급 이상의 기준으로 조정하여 앞서 나가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정관 제67조(하부조직)의 실장을 주사로 보하되란 문구를 실장을 사무관으로 보하되로 수정하고, 「(별표 3)예림학교 일반직 직급표(제68조 관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6급은 5급으로 7급은 6급으로 기능직 9급은 일반직 8급(증원)으로 승진 발령하고자 합니다. 법인수익사업인 카페 ‘비반트’ 운영을 위해 정관 제31조(수익사업) ①항에 3. 휴게음식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정관변경(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요청하다.

○ 김정환이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인천예림학교에 관련된 사항과 법인 수익사업 추가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함은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충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5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 하다.

### 5) 기타토의

- 장영순의장 : 기타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다.

###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2:30에 폐회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

2013. 12. 18.

사회복지법인 손파손

대표이사

장영순

이    사

이상준

이    사

김정환

이    사

김영길

이    사

홍인식

이    사

이충호

이    사

황성수